

해외연수/출장 보고서

■ 출 장 자	최 현 수
■ 출 장 지	미국
■ 출 장 기 간	2012. 9. 23 ~ 9. 28
■ 목 적	미국 SSI 등 공공부조프로그램 선정체계 및 수급률 동향 관련 자료수집
■ 세부 활동사항	
○ 일정별 세부 활동사항 (일자 / 지역 / 방문기관 / 면담자) (9/23) 출국 (9/24) Atlanta, 기관방문 및 인터뷰, 자료수집 Social Security Administraion Office / Tax Assistance Office / ACF-SSI Regional Federal Office - SSI 수급률 제고방안 관련 SNAP, Medicaid 연계 신청체계 자료수집, 상담접수 담당자 인터뷰 - Tax return 및 EITC 수급률 제고를 위한 신청지원 및 편의제고 방안 등 자료수집 (9/25) Chicago, 기관방문 및 인터뷰, 자료수집 Northeastern Illinois Univ.(Prof.Jin Kim) - SSI 대상별 수급률 영향요인 관련 이론 및 SSI 수급변동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론 관련 인터뷰 - SSI 수급률 관련 선행연구 자료수집 (9/26) Boston Univ.(Prof.Yoonsook Ha, E.J kim) - 연방정부 Childcare Subsidy guideline 설정 방식 관련 인터뷰 - 주정부별 Childcare Subsidy 프로그램 운영정보 관련 자료수집 (9/27) Brandeis Univ. IASP(Sandra Venner) - 저소득층 Asset Development 프로그램 참여유지율 등 운영사례 및 소득보장제도 연계방안 인터뷰 - 저소득층 Asset Development 프로그램 시범사업 평가연구 관련 자료수집 (9/27~9/28) 귀국	

○ 주요내용

< 미국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선정체계 및 수급률 관련 최근 동향 >

- 미국의 소득보장제도 중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인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은 수급대상을 선정할 때 자산조사 과정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으로 세분화 하여 각각 확인하고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보충급여 방식에 의해 급여 지급을 하고 있음
 - 출장을 통해 수집한 미국 SSI의 운영 및 선정체계 및 수급률 관련 최근 자료를 보고함

1. SSI 개요

-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대표적 제도로,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SA)에 의해 관리 운영됨
 - SSI는 Social Security Act(사회보장법) 제16장에 근거하고 있으며, 약 800만명의 수급대상에게 제공되고 있음
 - SSI는 1974년에 federal-state adult assistance program을 대체하여 도입되었으며 적절한 수급조건과 지원 수준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였음
 - SSI는 주정부가 실시하던 노인지원 프로그램과 1935년부터 Social Security Act에 의해서 시행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1950년부터 실시된 장애인 지원프로그램을 조정하였음
 - SSI 프로그램으로 통합되기 전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 주정부는 급여수준을 정하고 프로그램을 관리하였으나, 그 기준이 주정부마다 상이하여 수급여부 등에 있어서 주정부간 불평등의 문제가 있었음
 - SSI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1972년에 만들어 졌으며 1974년부터 시행되었는데, SSA의 관리를 통해 모든 주정부에서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여 주정부간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였음

2. SSI의 수급대상 및 지급방법

- 수급대상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이 사용하는 정의에 따른 공통된 장애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어야 함
 - 장애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거나 죽을 때까지 또는 1년 이상 지속되는 의학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육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이유로 인해 실질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함
 - 실질적인 소득활동(SGA)는 2012년 기준으로 월 \$1,010임(시각장애인의 경우 월 \$1,690)
 - 18세 이하의 아동(또는 22세 이하의 학생)의 경우 SSI 기준으로 “개인이 의학적으로 알 수 있는 장애 또는 활동에 심각하게 제한을 가지거나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리고 12개월 이상 계속되는 복합적인 장애를 가진 경우”에 장애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시각장애인
 - 보정렌즈를 사용한 중심 시력이 20/200 또는 그보다 낮아야 하며 시야의 앵글이 20보다 작아야 함

□ SSI 신청방법

- 신청 방법은 1-800-772-1213으로 연락 또는 편지, 방문, 인터넷이 있음
- 연락을 할 경우, 신청양식을 보내주는데, 양식 내에는 질병에 관련된 질문 및 필요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며, 그 후 인터뷰를 통해서 확정하게 됨

□ SSI 지급방법

- SSI지급 전에 지급금액 및 지급이 시작되었음을 편지로 공지함
- SSI지급금액은 기본적으로 첫달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됨
- 예외적으로 첫달의 소득과 두 번째달의 소득이 예정되지 않은 소득(비정상소득)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경우, 일회성 소득은 해당 월에만 적용되며 다음달부터는 다시 고정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금액이 정해짐
- 예를 들면, 월 \$270을 받고 있는 수급자가 6월에 복권이 당첨되어 \$200를 받게 되면 8월에는 \$70만 수급받으나 9월에는 다시 \$270을 수급받게 됨
- 2011년 5월 이후 SSI를 신청한 사람은 계좌입금 또는 카드를 지급받아 지급금이 입금된 카드를 사용함
- 만약 계좌입금 또는 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한다는 항목에 체크하지 않은 경우 지급방식을 2013년 3월까지 변경해야 함
- 매년 1월 생계비 지수의 인상에 맞춰(COLA) SSI지급금액 역시 상승하게 됨

3. SSI 수급을 위해 조사되는 항목

□ SSI 지급대상 선정 시 고려되는 소득

- 근로소득
 - 근로자의 임금 및 자영업자의 순소득, 보호된 작업장(sheltered workshop), 근로활동센터(work activity centers)에서 벌어들인 소득, 전문직 서비스의 사례비 및 로열티
- 비근로소득
 -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과 같은 노동이 수반되지 않은 모든 소득을 칭하며 여기에는 각종 연금, State disability payment, 퇴직금, 임대소득, 이자소득, 주식배당금, 친인척으로부터 받은 돈이 속함.
- 현물지원
 - 타인에게서 지급받은 음식이나 잠자리나 돈이 속함
- 예외 사항
 -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나, 주정부, 연방 지원프로그램에 의해서 제공되는 현물보조는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음
 -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SSI 수급대상이 타인의 집에서 살고 있고, 집주인으로부터 현물과 생활비 도움을 받고 있으면 선정기준과 최대급여액이 전체 중 1/3(2012년 기준 \$232.66)이 감소하게 됨
 - 노인 및 장애인 전용 비영리단체에 의해 제공된 비근로소득과 생활비 지원은 SSI 프로그램에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

- 적정온도에서의 생활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은 소득으로부터 제외되는데, 예를 들면 노인,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난방용 연료나 가스 제공자, 공기업, 또는 비영리단체에서 제공되는 난방비용과 같은 지원은 제외됨

○ 본인외 소득

- 함께 생활하는 배우자, 부모, 도움을 주는 사람의 소득
- 그 외 세금환급금 및 비정기적인 수입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SSI 지급대상 선정 시 고려되는 재산

- 현금, 예금, 채권, 주식, 부동산, 생명보험, 차량, 본인의 배우자 등의 재산
- 공제되는 재산
- 자가 및 생활용품, 가족묘지, \$1,500이하의 장례비 펀드, \$1,500이하의 생명보험, 운송수단으로 사용하는 차량 한 대

□ 거주기준

- SSI 수급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래 중 하나에 속해야 함
-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
- 난민이거나 7년 이하로 국가에서 살아온 망명자
- 시민은 아니지만 1996년 10월 22일에 SSI를 받고 있었던 인증된 체류자
- 시민은 아니지만 1996년 10월 22일에 미국에서 살고 있었고 그 뒤에 장애를 갖게 된 경우

□ 소득, 재산, 거주기준 외 SSI를 받지 못하는 경우

- 불법적인 행위 후 도망자 신세인 경우
-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
-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 타인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

4. 소득 및 재산 적용방법 및 SSI금액 결정

□ 소득

- SSI를 수급할 수 있는 소득기준은 제도가 시행된 1974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높아졌음
- 1974년 : 개인 \$140, 부부 \$210
- 2000년 : 개인 \$513, 부부 \$769
- 2012년(현재) : 개인 \$698, 부부 \$1,048
- 2013년(예정) : 개인 \$710, 부부 \$1,066
- 소득기준은 보충급여 방식에 의해 운영되는 SSI의 특성 상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급여액에 해당됨
- 특히, SSI의 경우 소득기준 가운데 수급자의 거주여건에 따라서 선정기준이 조정되는데, 수급자가 타인의 집에서 살면서 다양한 도움과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이들 SSI 수급대상 개인이나 부부에게는

연방 SSI 선정기준의 2/3만 적용하여 하향 조정됨

- 2012년 기준으로 이처럼 타인의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SSI 선정기준 및 최대급여액 수준은 개인의 경우 \$465.34, 부부는 \$698임
- 연방 SSI의 선정기준은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에 의해서 연동(index)되며 Social Security Cost-of-living adjustment(COLA) 조항을 참고해서 조정됨
- 요양기관에 장기 입원중인 사람을 위한 급여수준
 - Medicaid를 통해 병원비 절반 이상을 지불하는 경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매월 \$30로 SSI 급여수준 감소
 - PNA(personal needs allowance)로 불리는 이러한 급여액은 개인의 의료비용을 소액 보조하는 것임
 - PNA는 1974년에 처음 시작해서 1988년에 \$25에서 \$30로 증가했으며 현재도 \$30로 유지되고 있음

〈표〉 SSI 선정기준 및 최대급여액 변화 (1974~2012)

(단위: \$)

연도	개인		부부		공공 요양기관 입원중인 수급자	(B - A)
	본인의집 (A)	타인의집	본인의집 (B)	타인의집		
1974	140	93.34	210	140	25	70
1975	157.7	105.14	236.6	157.74	25	78.9
1980	238	158.67	357	238	25	119.2
1985	325	216.67	488	325.34	25	163
1990	386	257.34	579	386	30	193
1995	458	305.34	687	458	30	229
2000	513	342	769	512.67	30	257
2001	531	354	796	530.67	30	266
2002	545	363.34	817	544.67	30	273
2003	552	368	829	552.67	30	277
2004	564	376	846	564	30	282
2005	579	386	869	579.34	30	290
2006	603	402	904	602.67	30	302
2007	623	415.34	934	622.67	30	312
2008	637	424.67	956	637.34	30	319
2009	674	449.34	1,011	674	30	338
2010	674	449.34	1,011	674	30	338
2011	674	449.34	1,011	674	30	338
2012	698	465.34	1,048	698	30	350
2013(예정)	710	473.25	1,066	710	30	356

- SSI 수급여부 결정 및 급여수준 결정 시에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에 대해서 공제 (major exclusions)가 적용되고 있음
 - 비근로소득의 경우, 정액으로 \$20의 공제가 적용됨
 - 근로소득의 경우, 먼저 정액 \$65가 공제되며, 이후 나머지 근로소득의 50%가 정률로 공제됨
 - 이러한 공제수준은 물가와 연동시키지 않고 있음
- SSI는 자활을 위해 인정된 계획의 일부(PASS)에 의해 제공된 소득과 재산은 포함하지 않음

□ 재산기준

- 재산기준은 개인 \$2,000, 부부 \$3,000임
- 물가와 연동시키지 않기 때문에 1989년 이후 변경되지 않음
- 부부 중 한명만 재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부부의 기준(\$3,000)을 적용함

□ 급여수준 결정방식

-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으로 구분된 소득의 경우 앞서 언급한 공제방식에 의해 각각 공제 적용 후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의 합산에 의해 수급대상 가구의 소득수준이 산정됨
- 재산기준을 충족하고, 위와 같이 산정된 소득수준이 노인 개인 및 부부에 따른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SSI 수급대상으로 선정됨
- SSI 급여수준은 연방정부에서 해당 선정기준으로부터 개별 가구의 소득수준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됨
- 만약, SSI 수급대상 노인과 수급대상이 아닌 배우자(비노인)로 구성된 가구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가구의 공제 후 소득수준이 연방 SSA에서 제시한 SSI 부부의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만 SSI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2008년 기준으로, 비노인 배우자가 임금근로소득으로 매월 \$600를 받고 있고 SSI 신청노인이 \$200의 연금 급여(Social Security benefit)를 받고 있을 경우, 각종 공제가 적용된 후 소득수준은 \$447.50이며, 선정기준인 \$956에 미치지 못하여 수급대상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보충급여 방식에 의해 차액인 \$508.50의 SSI급여를 수급하게 됨
 - 만약, \$200의 연금급여(Social Security benefit)만을 받고 있는 노인 개인이라면, 소득수준은 \$200의 비근로소득 공제 적용 후 \$180가 되며 2008년 선정기준인 \$637보다 낮으므로 수급대상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457(\$637-\$180)의 급여를 수급함

<공제 후 소득수준 및 SSI 급여 결정방식 예시 (2008)>

Unearned income of eligible individual	\$200.00
Less \$20 exclusion	-20.00
Countable unearned income	180.00
Earned income of ineligible individual	600.00
Less \$65 earned income disregard	-65.00
Less one-half of remaining earnings (\$535)	-267.50
Countable earned income	267.50
Plus countable unearned income	+180.00
Couple's total countable income	447.50
SSI payment standard for couples	956.00
Less countable income	-447.50
Calculate Benefit payable to eligible individual	508.50

자료: 2008 Green Book, Committee in way and means U.S.House of representatives

5. 개인정보가 변경된 신고 절차

- 기본적으로 정보가 변경된 이후 10일 내에 연락을 통해 변경해야 함. 만약 늦게 연락하여 잘못된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 이를 다시 반납해야하며, 잘못된 정보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법적인 제재 또는 심하면 구금될 수 있음
- 연락 방법은 1-800-772-1213으로 연락 또는 편지, 방문, 인터넷이 있음
- 은행계좌가 변경된 경우
 - 30-60일내에 변경된 정보를 SSI 관리팀에 연락하여 전달해야 함
 - 변경 전 계좌는 새로운 계좌에 입금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시켜야 함
- 가구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 가구구성원 중 누군가가 분가한 경우나 또는 누군가 가구로 들어온 경우, 가구구성원 중 누군가가 죽은 경우, 가구에 아이가 태어난 경우를 뜻하며 이러한 경우는 SSI관리팀에 연락하여 변경된 점을 전달해야 함
-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변경된 경우
 - 본인의 소득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소득을 SSI관리팀에 전달하여야하며, 변경된 소득은 당월부터 2월 이후에 SSI지급금에 적용됨
 -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변경된 경우 그 가구구성원이 배우자라면 배우자의 변경된 소득을 전달하면 됨
 - 하지만 SSI소득을 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전달해야함
 - SSI를 받고있는 자녀의 소득
 - SSI를 받고있지 않은 자녀의 소득 및 결혼여부, 22세 이하인 학생여부, 근로여부
 - 부모의 소득
- 자산이 변경된 경우
 - SSI를 수급하고 있는 본인 또는 배우자, 아동인 경우는 아동의 부모의 자산이 변경된 경우는 SSI관리팀에 보고해야 함. 이를 통해서 미리 지급되었던 금액을 다시 반납할 수도 있음.
 -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계좌이지만 타인이 사용하거나, 의료비용과 같은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인 경우 SSI관리팀에 보고해야 함. 이러한 계좌는 SSI관리팀이 확인 후에 수급자의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음
- 구호소, 의료기관, 감옥과 같은 기관에 입소하거나 또는 퇴소한 경우
 - 입소 또는 퇴소한 날짜와 기관명을 보고해야 함
- 결혼 또는 이혼,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
 - 결혼한 경우에 결혼하였음을 보고하며 본인의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정보도 보고하도록 하며 이혼한 경우는 나뉘어진 재산이나 소득 등을 보고함
 - 현재 배우자와 떨어져 사는 경우 언제 다시 모여 살게 될지 보고해야 함
- 미국을 떠나게 되는 경우
 - 해외로 떠나기 전에 떠나는 날짜와 다시 돌아오는 날짜를 SSI관리팀에 보고해야 함

- 3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SSI가 지급되지 않음
- 예외적으로 해외에서 체류하는 미군소속 군인의 자녀는 SSI수급이 가능함
- 미국 시민권자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이민자인 경우
- 이민자의 소득 뿐만 아니라, 배우자, 도움을 주는 사람 및 배우자의 소득이 고려됨
- 또한, 이민자가 미국국민이 되거나 또는 10년 동안 일하기 전까지는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의 소득이나 자산이 변하는 경우 SSI관리팀에 이를 보고해야함
- 수급자가 죽은 경우
- 만약 SSI를 수급받는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수급금액이 변동됨
- 죽은 수급자의 계좌에 이미 돈이 입금된 경우에는 은행에서 SSI관리팀에 보고를 해야하며 죽은 뒤에 입금된 금액을 반납해야 함